

계약일 (직원기입)	
---------------	--



투자 일임 계약서

고객명 : _____ **님**

엑스포넨셜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710A호 (여의도동, CCMM빌딩)

Tel : 02-6958-6507 / Fax : 02-6958-6506

_____님(이하 “갑”이라 한다)과 **엑스포벤처자산운용(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 투자자금(이하 “계약자산”이라 한다)에 대해 “갑”이 “을”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고자 다음과 같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과 “을”은 “계약자산”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3조에 의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며 “갑”은 투자일임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2조 (투자일임의 대상)

“을”이 “갑”에게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투자일임의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
2.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을 위하여 공개되는 주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장내파생상품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각 증권
5. 관계법령에서 허용한 투자일임자산
6. 기타 “갑”과 “을”이 사전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3조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을”이 “계약자산” 운용을 위해 “갑”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의 계약자산운용에 대한 투자일임서비스
2. “갑”의 계약자산운용일임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
3. 기타 계약자산운용일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투자일임수수료)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로 구분되며,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갑”은 기본수수료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2. “갑”은 계약만기 또는 계약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지급조건을 충족하거나 수익률이 성과수수료 지급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본 계약 제20조와 <별지2> “투자일임수수료에 관한 기준”에 의거 성과수수료의 전부를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 (계약자산금액의 산정)

“계약자산”의 산정은 계약기간 개시일의 전일, 계약해지시는 해지일 전일, 계약만료시는 계약기간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자산”에 현금 외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자산” 금액을 산정한다.

1.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주식,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등은 한국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주식회사가 공표하는 계약일 전일의 종가
2. 채권은 계약일 전일의 종가 또는 동종채권의 수익률 (단, 종가 또는 수익률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발행이율에 의한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
3. 장외시장에 등록된 주식은 취득가

4. 비상장주식은 취득가
5. 수익증권은 계약일 전일의 기준가
6. 기타 자산은 “갑”과 “을”이 협의한 가액

제6조 (투자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1. 투자수익률의 계산: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자산의 연환산수익률로 계산한다. 단, 평가자산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종가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미상장된 공모주 등)은 편입단가로 계산한다.
2. 미실현이익의 계산: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 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가격,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증자분을 사전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채권에 있어서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경과이자 등 미실현이익은 사전산입하는 것으로 한다(단, 종가 또는 수익률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발행이율에 의한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
3. 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은 계약만기일로 한다.

제7조 (투자일임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1. “을”은 “갑”에 대한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갑”의 의견 및 계약자산의 내용과 규모 등 사전조사된 “갑”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 “을”이 “갑”에 대한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 (신의성실의무)

“갑”과 “을”은 투자일임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있어 신뢰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무)

1. “갑”은 “을”이 투자일임업무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을”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2. “을”은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투자자산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기타의 사항에 대해 “갑”의 사전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을”은 “갑”이 거래하는 증권회사 영업점으로부터 “갑”이 개설한 계약자산 운용구좌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갑”의 의사 등 사전파악)

1. “을”은 “갑”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갑”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투자대상자산,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갑”의 의사를 계약자산 운용일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2. “갑”은 자기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을”의 투자자산운용사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의 투자자산운용사는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단, 투자자산운용사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투자자에게 상담할 수 있다.
3. “갑”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해지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통지의무)

1. “갑”은 은행 특정금전신탁계약 또는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을”의 투자일임서비스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지정된 투자일임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하는 통지는 제20조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또는 전화로 한다. 단, “갑”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자산의 운용책임 및 손익의 귀속)

“계약자산”의 운용은 “을”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 그 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3조 (운용계획 및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을”은 “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매매회전율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 거래실적 및 잔액
5.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 (“을”의 제한사항)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갑”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일임자산의 보관, 위탁을 받는 행위
2. “갑”에게 현금 또는 투자일임자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현금 또는 투자일임자산의 대여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일임자산에 관해 “갑”에게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 특정 투자일임자산에 관해 조언을 받는 “갑”의 매매에 의한 당해 투자일임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당해 “갑” 외에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조언하는 행위
5. 근거 없이 허위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
6.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투자일임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
7. “갑”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투자일임자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갑”의 투자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규정된 행위
8. “을”의 고유재산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투자일임자산과의 거래행위
9. 다른 고객의 투자일임자산과의 거래행위
10. 고객의 동의없이 “을”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규정된 행위

제15조 (“을”이 위임받을 수 없는 행위)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

1. 계약자산을 예탁하는 증권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계약자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3. 계약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의결권,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행위

제16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일임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내로 하며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호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 계약은 12개월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경우에 계약조건은 본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하되, 아래 제20조 계약의 내용중 계약기간, 계약자산, 기본 및 성과수수료 부분에 변경이 있을 경우 “갑”과 협의를 통해 부가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및 변경)

1. “갑”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그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의 해지의사표시는 그 서면을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2. “갑” 또는 “을”은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계약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서면이나 유선통보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의 변경은 “갑”과 “을”의 상호간 합의에 의한다.
4. 계약자산의 증액 및 감액, 해지에 의한 수수료 산정 및 지급은 <별지2>“투자일임수수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18조 (계약개시, 만료, 해지시의 자산형태)

“갑”과 “을”이 계약을 개시, 만료 및 해지하는 시점에서의 자산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19조 (“갑”이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갑”이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갑”이 별지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하고, “을”의 “갑”에 대한 의무를 대리인에 대한 의무로 대체한다.

제20조 (계약의 내용)

“갑”과 “을”이 합의한 계약의 내용은 [별지 1] 세부계약조건에 따른다.

제21조(금융소비자보호(적합성원칙) 관련사항)

- ① “을”은 “갑”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라 함)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로 확인될 경우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동조 제2항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관련법령에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일반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금융소비자보호(설명 의무) 관련사항)

- ① “을”은 “갑”이 금소법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로 확인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②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을”이 정하는 위험등급, 수수료, 계약 해지·해제 관련사항, 계약기간, 예상손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금소법 준수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은 금소법을 준수하며,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소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24조 (기타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을”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월 일

“갑” 성 명 : _____ [서명 또는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_____

주 소 : _____

“을” 법 인 명 : 엑스포비셀자산운용(주)

대 표 이 사 : 김 기 태 [서명 또는인]

사업자등록번호 : 859-87-00567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01, 710A호 (여의도동, CCMM빌딩)

[별지1. 세부 계약조건]

[별지2. 투자일임수수료에 관한 기준]

[별지3. 투자업무 담당 임직원 소개]

[별지4.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